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30-01



미래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 정책 수립 지원 :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Support for IP tax policy :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corporate tax cuts to support patent commercialization

2021.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중,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 연 구 책 임 자 : 조상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요약

제1장
·
연구 개요

- **(배경)**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통한 기술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주요 국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
 - 연구개발의 낮은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더 낮아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으로 조세지원제도가 활용될 수 있음
- **(필요성)**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인 혁신경쟁력 성장은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과 IP(Intellectual Property)가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는 총 77,988.8백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4.53%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임(www.ntis.go.kr)
 -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특허 출원수는 209,992건으로, 중국(1,542,002), 미국(597,141), 일본(313,567)에 이어 세계 4번째임(www.wipo.int)
- **(목적)** 본 연구는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특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특허박스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은 특허 사업화의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게 되므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연구범위)**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의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게 있어 법인세 감면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 특허박스제도가 시행되면 특허 사업화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혜택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허활용(사업화 및 기술거래) → 특허창출(특허출원등록) → 연구개발활동』의 순으로 조세혜택의 파급효과가 차등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법인세 감면효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특허박스제도에서 목적하는 “사업화 지원” 이라는 강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성된 결과이므로, 분석결과 보다도 제도시행 시 사업화를 통한 ①매출증대, ②특허출원등록, ③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항목에 있어 기업에 미치는 실효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

제2장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 **(특허박스제도)** 1973년 아일랜드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도입한 특허박스제도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어주는 제도로, 자국 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 기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특허박스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이에 대한 세금우대 내용은 다양하며 국가별로도 상이함
 - 지식재산 관련 소득 유형은 ▲지식재산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지식재산 자체의 이전 ▲지식재산 자체의 대여 등으로 구분되고 특허박스제도 적용 소득유형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함
- **(도입국)**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1년 현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터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몰타 등의 유럽국가와 중국 등 15개국이 시행하고 있음
 - 최초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했던 아일랜드와 최근 특허박스를 이노베이션 박스로 개선한 네덜란드의 경우 적용세율이 각각 6.25%와 5%로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 영국은 일반 법인세율 22%를 10%의 세율로 낮춤으로서 지식재산 활용에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 **(도입효과)** EU(2016)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혁신성과지수(Innovation Performance Index)*가 비도입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도입국 평균 혁신지수는 0.541로 EU평균 0.521 보다 높았고, 미도입국 평균은 0.430으로 도입국에 비해 혁신지수가 낮음**
 - * EU가 매년 EU회원국의 혁신활동성과지원 등 25개 부분을 평가하여 지수로 발표함
 - ** EU, Innovation Union Scordboard 2016, 2016
 - 2011~2015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연평균증가율이 평균 3.8%,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은 10.8%, 미도입국은 -8.0%로 나타남(유경진, 2017)

- **(쟁점)** 기존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R&D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해외 특허박스제도 도입국들이 R&D 세액공제, R&D 추가비용공제, 특허박스제도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음
- **(이중지원)**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과, 그 특허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며,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별도로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조세손실보존)** 특허박스제도로 인해 단기적으로 조세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수익의 기반을 강화해 조세손실을 보전하거나 조세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
 - **(대기업 중심)** 대기업 혹은 몇몇 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제도 운영상의 유연성이나 선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임. 다른 반대편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나, 제도의 도입취지 및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점도 있음. 특허박스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조세혜택의 비중의 문제는 충분히 따져보아야 할 사안 중의 하나이지 이 검토 자체를 가로막은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됨

제3장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안)

■ (1안)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의 특허박스제도 적용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혹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적용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별표7의 정의를 따름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 단,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25%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함

- (우수특허 보유 및 활용) 신성장동력산업 중 발명진흥회의 SMART3 평가 인증에서 AAA, AA, A, BBB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특허를 보유하고,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 50% 감면

* SMART3 등급별 분포를 보면 AAA(4%), AA(7%), A(12%), BBB(17%) 등의 정규분포 형태를 가지고, 우수특허범위로 AAA, AA, A, BBB 등급까지 한정하면 40% 비중이 우수특허 범위가 됨

■ (2안) 특허사업화 대상 특허박스제도 적용 (중소기업 한정)

-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50%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 BEPS Project의 제안 요건을 따라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을 적용함
- 넥서스 접근법은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특례제도를 적용
 - (nexus ratio) 지식재산 소득 중 지식재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지식재산에 기여한 연구개발 지출에 비례함
- 수정된 넥서스접근법의 요건에 따라 적격비용의 30%를 증액(30% up-lift) 요건 적용
- 법인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지만, 연구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다수가 분포된 법인세율 20%(과세표준구간 2억초과~200억이하)를 적용함

* 중소기업 평균 실효법인세 비율이 2019년 기준 16.8%임

- IP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은 국내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비중(서울신용평가)과 무형자산 중 IP 비중(S&P500), 중소기업 과세표준액을 곱하여 추정함

■ 데이터

-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법인세(2016~2019)
- NICE신용평가(주), 외감기업 재무정보(2016~2019)
- 특허청 특허정보(2016~2019)
- 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3 평가정보(2016~20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을 아래 표에서 구할 수 있음

제4장 ·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실증분석 모형

-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 취지의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도입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 예측이라는 특성상 본 제도의 비용과 편익은 모두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추정함
-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의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게 있어 법인세 감면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 기업의 법인세 증감에 따른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 특허창출 등의 변화를 추정함
- (1안)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성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산업(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과 (2안)혁신활동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중소기업 전체에 대하여 분석함

(1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산업		(2안)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②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25% 감면
우수특허를 보유하고서 우수특허를 활용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		

■ 실증분석 결과

-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적용 시 예상되는 조세감면액을 적용하여 매출 창출 효과, R&D 창출 효과, 특허 창출 효과를 추계함
- (1안)의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중소기업에 50.5억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주어질 경우 매출, R&D, 특허 창출 효과는 각각 185억 원, 14억 원, 0.6건으로 나타남
- (1안)의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모두를 포함할 경우 125억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주어질 경우 매출, R&D, 특허 창출 효과는 각각 557억 원, 59억 원, 13.2건으로 나타남
- (2안)의 중소기업 전체에 대하여 1,010억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주어질 경우 매출, R&D, 특허 창출 효과는 각각 2,242억 원, 206.6억 원, 8.9건으로 나타남

▶ 법인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감면액 (백만원)	매출 창출 효과 (백만원)	R&D 창출 효과 (백만원)	특허 창출 효과 (건)
(1안) 신성장동력 산업	중소기업	5,050	$3.67 \times 5,050 = 18,533.5$	$0.2778 \times 5,050 = 1,402.89$	$1.10e-10 \times 5,050 = 0.6$
	중견기업	7,453	$4.99 \times 7,453 = 37,190.47$	$0.6049 \times 7,453 = 4,508.32$	$1.69e-09 \times 7,453 = 12.6$
	중소·중견기업	12,503	55,723.97	5,911.21	13.2
(2안) 중소기업 전체		100,996	$2.22 \times 100,996 = 224,211.12$	$0.2046 \times 100,996 = 20,663.78$	$8.86e-11 \times 100,996 = 8.9$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2장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의 개요

제1절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7
1.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7
2.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8
제2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9
1. 유럽의 특허박스제도 개요	9
2. 아일랜드의 특허박스제도	11
3. 영국의 특허박스제도	11
4. 중국의 첨단기술기업 지원 제도	12
제3절 특허박스제도 관련 선행 연구	19
1. 특허박스제도 관련 선행연구	19
2.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	20
제4절 특허박스제도 도입에 관한 논거	22

제3장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안)

제1절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설계(안)	27
1. (1안)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의 특허박스제도 적용	27
2. (2안) 특허사업화 대상 특허박스제도 적용 (중소기업 한정)	28

제2절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안) 조세감면액 추계 29

- 1. 데이터 29
- 2. (1안) 신성장동력산업 특허박스제도 적용 조세감면액 30
- 3. (2안) 특허사업화 대상 특허박스제도 적용 조세감면액(중소기업) 31

제4장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35

- 1.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세액감면액 추계 35

제2절 실증분석 결과 38

- 1. 매출 창출 효과 38
- 2. R&D 창출 효과 42
- 3. 특허 창출 효과 4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 법인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 47
- 2. 연구의 한계 47

참고문헌 / 49

붙임자료 / 51

표 목차

표 2-1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7
표 2-2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9
표 2-3	총수익 중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 비중	13
표 2-4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제11조	13
표 2-5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14
표 2-6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14
표 2-7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15
표 2-8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16
표 2-9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16
표 2-10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17
표 2-11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18
표 2-12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
표 2-13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단위: 백만 달러, %)	21
표 2-14	해외 주요국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22
표 3-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015~2017)	29
표 3-2	기업의 평균 부담세액, 특허박스혜택 법인수, 특허박스혜택 감면액 계산식	29
표 3-3	(1안) 특허박스제도 조세감면액	30
표 3-4	특허박스 감면혜택 추계식	31
표 3-5	용어 설명	31
표 3-6	중소기업 특허사업화 대상 특허박스제도 적용 조세감면액 추계	32
표 4-1	법인세 감면을 통한 매출 창출 효과	40
표 4-2	법인세 감면을 통한 R&D 창출 효과	41
표 4-3	법인세 감면을 통한 특허 창출 효과	43
표 5-1	법인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47

미래전략 - 국가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그림 목차

그림 2-1 Streaming방식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적용 12
그림 3-1 SMART3 등급별 비율 27

미래전략

국가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통한 기술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주요국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
-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함
- 연구개발의 낮은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더 낮아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으로 조세지원제도가 활용될 수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인 혁신경쟁력 성장은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과 IP(Intellectual Property)가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는 총 77,988.8백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4.53%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임(www.ntis.go.kr)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특허 출원수는 209,992건으로, 중국(1,542,002), 미국(597,141), 일본(313,567)에 이어 세계 4번째임(www.wipo.int)

- 본 연구는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이외에는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음
- 특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특허박스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은 특허 사업화의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게 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한 매출액 증감, R&D투자 창출, 특허창출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범위

- 국내에서는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한 경우가 없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없음
-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의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게 있어 법인세 감면의 경제적효과를 분석함
- 특허박스제도가 시행되면 특허 사업화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혜택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허활용(사업화 및 기술거래) → 특허창출(특허출원·등록) → 연구개발활동』의 순으로 조세혜택의 파급효과가 차등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법인세 감면효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특허박스제도에서 목적하는 “사업화 지원” 이라는 강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성된 결과이므로, 분석결과 보다도 제도시행 시 사업화를 통한 ①매출증대, ②특허출원·등록, ③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항목에 있어 기업에 미치는 실효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

제 2 장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의 개요

- 제1절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 제2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 제3절 특허박스제도 관련 선행 연구
- 제2절 특허박스제도 도입에 관한 논거

제 1 절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1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
- 국내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이 있음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등”)을 이전·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특허박스제도와 비교하기도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점, ‘지식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점에서 특허박스제도와 차이가 있음

표 2-1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	특허박스
목적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국내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방법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IP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세액감면	‘IP 제품’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뿐만 아니라 특허권등을 통한 사업화 소득에 세액감면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업규모 제한 없음

출처: 조상규,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

2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투자 및 낮은 성공 확률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1973년 아일랜드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주요국들도 자국 내 기업의 혁신기술을 통한 사업활성화,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지식재산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및 혁신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함
- 특허박스제도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어주는 제도로, 자국 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 기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유럽의 다수국가에서 적용 중인 특허박스제도는 특허가 기여한 순소득만을 구분·적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래의 법인세율을 적용
- 중국은 2008년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일반법인세율 25% 보다 10%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 경감도 지원함
 - *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을 규정
 - ** 관할 조세당국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첨단기술기업 HNTE (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와 ATSE(Advanced and new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s) 자격을 부여함
- 특허박스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이에 대한 세금우대 내용은 다양하며 국가별로도 상이함
- 지식재산 관련 소득 유형은 ▲지식재산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지식재산 자체의 이전 ▲지식재산 자체의 대여 등으로 구분되고 특허박스제도 적용 소득유형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함

제 2 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1 유럽의 특허박스제도 개요

- 특허박스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1년 현재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터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몰타 등의 유럽국가와 중국 등 15개국이 시행하고 있음
- 특허박스제도가 적용되는 소득 유형은 ▲지식재산 자산이 내장된 제품의 매출 ▲지식재산 자산 자체의 이전 및 처분 ▲지식재산 자산 자체의 대여(실시허여)로 구분되며, 적용 소득 유형도 국가별로 다양함
- 최초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했던 아일랜드와 최근 특허박스를 이노베이션 박스로 개선한 네델란드의 경우 적용세율이 각각 6.25%와 5%로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 영국은 일반 법인세율 22%를 10%의 세율로 낮춤으로서 지식재산 활용에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표 2-2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국가	도입	적격 IP 자산	대상소득	PB세율/ 법인세율
아일랜드	1973~ 2010, 2015	(EU) 특허, 저작권, 상표, 노하우, 적격 컴퓨터 프로그램 및 R&D 결과 특허권,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 활동 수행 필요	IP에 관한 특정 판매수익	6.25% / 12.5%~ 33%
프랑스	2001, 2019	(EU)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확장된 특허인증서(특허추가보 호인증서), 유틸리티인증서, 식물품종인증서, 산업조립공정(취득IP 포함), 특허 가능한 발명품(중소기업 한정), 인수한 IP는 2년 이상 보유시 적용	취득후 2년이상된 IP의 양도 순소득, 라이선스수수료	법인세의 10% 감면 / 25.83%~ 32.02%
터키	2001	터키 내 R&D, 혁신에 의한 발명(취득IP포함), 허가권, 특허권, 개작권, 개발, 수정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20%
헝가리	2003	특허권, 실용신안권, 식물다양성 보호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배 타적 권리, 희귀위약품 등	소득 및 이전소득의 50%	4.5~9% /9~18%
이스라엘	2004	해당없음. 외국인 거주자에게 산업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고 과학자 사무실"로 승인받아 세금감면을 받음	외국인을 위한 산업 R&D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6% /7.5%/ 12%

미래전략 - 국가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국가	도입	적격 IP 자산	대상소득	PB세율/ 법인세율
벨기에	2007	(전 세계) 특허권, 부수적 특허인증서, 사육권, 희귀의약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 활동 수행 필요	총특허소득, 순혁신소득	5.1%~ 6.8%/ 33.99%
네덜란드	2007	(전 세계) 소프트웨어, 특허권, 품종특허권, 의약품 유통 라에 선스, 승인된 연구용역으로 취득한 IP(추가 자체개발 IP 포함),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 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5% / 25%
스페인	2008	(EU) 특허권, 디자인, 노하우, 비밀공식, 공정, 계획, 모델(취득IP 포함)	순이익 및 비관계사 이전소득	10% /30%
룩셈부르크	2008, 2018	(전 세계)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품 또는 서비스판매로 인한 로열티, 자본이득 및 내재 IP 소득 및 이전소득 80% 면제 순자산세 면제	5.76% / 22.47%
중국	2008	특허기술 (국방특허포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식물신품종권, 집적회로설계특허권, 바이오신약과기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 기타 기술성과	보상소득금액 개인소득세액 50% 감면	0%~12.5% / 25%
몰타	2010~ 2016, 2019	특허권,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브랜드, 상표, 상호, 마케팅 관련 IP자산 제외	총 특허권 수입	0%~6.25%/12. 5%
스위스	2011	(전세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취득IP 포함)	IP취득원가를 제외한 총특허소득,이전소득	8.8%/11.5%~2 4.2%
키프로스	2012	특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 및 유전물질보호를 제공 하는 유틸리티 모델, 고아의약품지정 및 특허보호연장	로열티, 보험 또는 보상 금액, IP양도소득 80% 감면, IP이용 제품판매 수익(내재이용료)의 80% 감면	2% / 12.5%
영국	2013	(EU) 특허권, 부수적 보호인증서, 데이터 보호권, 화훼품종보호 권, 인수한 IP는 추가 IP 개발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 19%
포르투갈	2014	특허발명, 모델 및 산업디자인 등 혁신	적격IP 총소득(관계사거래 제외)	11.5%~ 23%
이탈리아	2015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델, 소프트웨어 저작권, 노하우, 비밀 공식, 공정 등	순이익의 50% 및 이전소득 전액 (90%이상 재투자 조건)	13.95% / 27.9%
리투아니아	2018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추가보호인증서로 보호되는 특허 가능성 기술	특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5% / 15%
슬로바키아	2018	특허권, 실용신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로열티, 내재사용료 (IP이용제품 판매수입)	10.5% / 21%
폴란드	2019	특허권, 발명에 대한 추가 보호 권리,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집 적회로지형등록의 권리, 의약품 또는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특허 에 대한 추가 보호 권리, 의약품 또는 수의학 제품 등록 권리, 식물신품종 및 동물품종등록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라이선스 수수료, IP양도소득, 적격IP 제품·서비스 판매 소득, 법원등 소송에 따른 침해보상	5% / 19%

출처: PWC, 『Tax Notes』, 2012, p.1667.; 문은희, 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입법과제, Lisa Evers, Helen Miller, and Christoph Spengel, Intellectual Property Box Regimes : Effective Tax Rates and Tax Policy Considerations, ZEW Discussion Paper, No. 13-070; NARS 현안분석 vol.17, 2018.; 박진석, 유럽지재권 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제도, 과학기술정책, 2014.;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April 2017.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주: 1. 스위스는 최근 Nidwalden의 스위스 주변만 아니라 스위스 전체를 포괄하는 주 단위로 2020년에 발효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서 개발된 특허 및 유사한 권리로 인한 소득에 대해 최대 90%의 과세 기준 감면을 제공하고, 칸톤은 더 낮은 감축을 선택할 수 있음
2. 터키는 "터키기술개발구역"에서 수행된 R&D 활동으로 인한 적격 지식재산소득에 대해 완전한 세액공제 (실효세율 0%)를 허용
3. 몰타는 2016년에 특허박스제도를 폐지. 그러나 몰타는 2019년 법인세에 관한 EU 행동 강령과 OECD의 수정 넥서스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4. 리히텐슈타인은 OECD의 수정 넥서스접근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허박스제도를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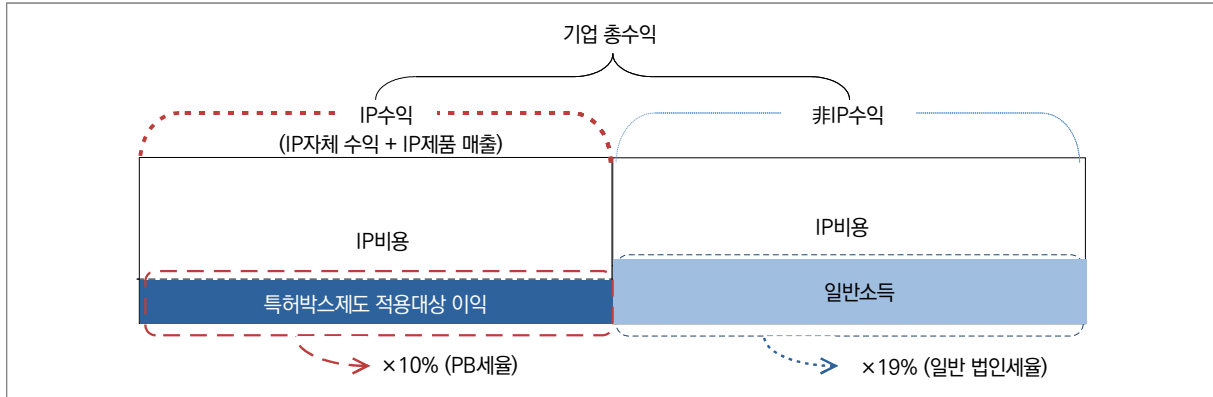
2 아일랜드의 특허박스제도

- 1973년 아일랜드가 특허박스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유럽의 특허박스제도의 원형으로서 선도적인 영향을 미침
-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12.5%인 법인세율을 특허박스제도 대상에는 6.25%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식재산권 개발 및 관리에 효과적인 투자국가로 인식되었고, 결과적으로 외자유치를 높이는 효과를 달성함
-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구제금융 이후 즉 2011년~2014년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사용료 등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특허박스제도를 폐지했다가, 2015년에 다시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함
- 아일랜드의 특허박스제도를 KDB(Knowledge Development Box)라고 부르고, 적격 수입에 법인세율 12.5%를 적용하고 나서 세액의 50%를 감면하게 되므로 실효세율은 6.25%가 됨

3 영국의 특허박스제도

- 영국은 IT기술 등 첨단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황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자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함
- 2009년 특허박스제도 입법을 제안, 2010년 말 법인세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1년 말에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초안을 마련, 2013년 4월에 이 제도가 발효됨
-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일반법인세 23%보다 낮은 10% 법인세를 부과함
- 2013년 특허활용 수익의 60%만을 특허박스제도 수혜대상으로 인정하고, 이후 매년 10%씩 인정비율을 높여 2017년부터 특허활용 수익을 100% 공제대상으로 인정함
- 영국의 특허박스제도는 특허권 및 특허 유사 권리를 보유·활용하는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적격 IP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 법정법인세율인 19%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10%의 세율 적용
- 최근 의무화된 Streaming방식은 지식재산을 통한 경우와 지식재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특허박스제도 적용

그림 2-1 Streaming방식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적용



출처: 류태규, 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6.

4 중국의 첨단기술기업 지원 제도

- 중국은 2008년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을 규정함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첨단기술기업*은 일반법인세율인 25% 보다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지방 정부의 첨단기술기업 조건에 부합되면 지방세도 경감받게 됨
 - * 관할 조세당국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첨단기술기업 HNT(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와 ATSE(Advanced and new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s) 자격을 부여함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에서 자국 내에 등록된 특허, 노하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500만 위안 까지 0%(면세), 500백만 위안 초과분에 대해서는 12.5%의 세율을 적용함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

제90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4항에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세’는 납세연도내에 거주자기업의 기술 소유권 양도소득이 5백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하고, 5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 수익자는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 첨단기술기업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며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함
-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불포함)에 등기된 기업으로 자체개발, 이전 또는 구매, 수증, 합병 등을 통해 과거 3년 전에 획득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5년 이상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함

- 대졸 이상 학력의 과학기술업무 종사자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되고, 10% 이상이 R&D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함
- 연구개발비 중 중국내 발생 비용이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되어야 하고,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는 직전년도 총수익 중 일정비율(6%, 4%, 3%)을 차지해야 함

표 2-3 총수익 중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 비중

직전년도 총수익(위안화)	총수익 중 R&D 지출 비율
5,000만 이하	6% 이상
5,000만 ~ 2억	4% 이상
2억 이상	3% 이상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년 기반전문위원회 정책이슈 발굴 연구, 2014.

- 중국 내 주요 첨단기술기업으로는 Huawei, ZTE, Xiaomi, Haier, Tencent, 삼성전자 북경연구소, Ericsson 광저우/남경 연구소 등이 있음
- 첨단기술기업 자격은 3년마다 갱신이 되고, 부적격 판정 시 감면 세액과 이자 추징 및 향후 5년 간 첨단기술기업 신청 자격 상실됨
- 대상소득은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으로, 로열티 소득, 대상 IP처분수입 등이고, 총수입 중 첨단기술 및 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이 60% 이상이어야 함
- 특허박스 소득을 별도로 구하지 않고 총소득에 인화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고부가가치 신기술 R&D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특허박스 개념이 결합된 형태임

표 2-4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제11조

첨단기술기업의 인정기준	
인정 신청 기업 요건	• 인정신청 시, 등록 및 신고가 1년 이상 된 기업
지식재산의 취득 방식	• 자체개발, 증여, 양도, 합병 등의 방식
기술 범위	• 국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첨단기술 영역(산업 유형 중심의 혜택 부여 판단, 지역별 조건은 부수적인 조건)
인적요건	•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종사 과학기술 인원이 당해 총 직원수 대비 10% 이상이어야 함
연구개발 비용 요건	• 최근 3년 회계연도 연구개발비 총액이 동기간 매출액 대비 비중이 다음과 같음 • 최근 1년 매출액 5,000만 위안 이하 기업 :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 5,000만 위안~2억 위안 기업 : 연구개발비 비중이 4%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 2억 위안 이상 기업 : 연구개발비 비중이 3% 이상 • 공통적으로, 기업이 국내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어야 함
수입 요건	• 최근 1년 첨단기술제품(서비스)의 수입이 동기간 총수입의 60% 이상 • 국내 소득 및 외국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 부여
기타	• 혁신능력평가, 인정신청 1년 이전에 품질, 안전, 환경 기준 충족 • 첨단기술기업 자격은 3년마다 갱신

출처: 조상규곽현김병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표 2-5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벨기에	프랑스
실효세율	IID*: 적격대상소득 × 5.1% PID: 적격대상소득 × 6.8% (법인세율 33.99%) ※ 우대세율/부분면세(소득세법 205조)	적격대상소득 × (15% ~ 15.5%) (법인세율 33.33%~36.1%) ※우대세율/부분면세(조세법 제39조)
적격IP	IID: 특허권, 추가 보호 인증서, 식물품종보호권, 희귀의약품, 데이터 및 마케팅 독점권 (EU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부여),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IP PID: 특허 및 추가 보호 인증서	특허권, 확장 된 특허 인증서, 특허 가능한 발명 및 산업 제조 공정
적격수입	IID: 순 혁신 수입 PID: 총 특허 수입	양도소득 *내재사용료 불허
취득IP	취득한 IP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로 얻은 자산	가능
혜택한도	IID: 혜택 제한 없음 PID: 세전의 100%로 제한되는 공제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포함	불포함
적격IP 판매이익 포함	IID: 포함(조건에 따라) PID: 불포함	포함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IID: 해외 수행 R&D성과 인정, 하지만 실제로는 벨기에 본사의 R&D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감독이 필요. 아웃소싱은 IID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PID: 해외 수행 R&D성과 인정, 본사 R&D센터가 일정 부분 활동을 하고, 회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함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인정	인정
제도 시행연도	IID: 2016년 7월, PID: 2007년	2001, 2005, 2010, 2011
기존IP 적용 여부	IID: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적격IP.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요청·취득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구PID 제도를 계속 적용 PID: 2007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IP	기존IP 적용

* 벨기에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특허소득공제제도(PID)가 폐지되고 혁신소득공제제도(IID)로 대체됨.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요청하거나 취득한 특허(보조보호인증서 포함)의 경우 납세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구PID 제도를 계속 적용 가능

** 2012년 프랑스 재정법(2011년 제정)은 특허 양도 수수료 공제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조상규·곽한·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표 2-6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헝가리	아일랜드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 × (4.5% ~ 9%) (추가로 실효세율을 더 낮출 수 있음)	적격대상소득 × 6.25% (법인세율 : 사업소득 12.5%, 수동소득(passive income) 25.0%) ※특별상각(조세통합법 294A조)
적격IP	특허권, 실용신안권, 식물품종권, 추가보호증명서 (SPC), 마이크로 전자 반도체 특허 지형, 저작권 소프트웨어, 독점권, 희귀 의료 제품 등록	적격 R&D 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적격 컴퓨터 프로그램 및 특허권
적격수입	적격 자산에서 얻은 이익(넥서스접근법 적용 가능)	적격 IP와 관련된 특정 거래의 이익.
취득IP	넥서스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적격 IP 획득 후 추가 R&D 활동한 범위
혜택한도	세액공제는 적격 이익의 50%, 최대 세전 이익의 50%	해당 무형자산에서 얻어진 사업소득의 80%가 공제한도

제2장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의 개요

항목	헝가리	아일랜드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포함	포함
적격IP 판매이익 포함	포함. 특정 IP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불포함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자체 R&D 활동 조건 하에서 가능	제한적임, R&D활동은 EU회원국의 아일랜드 회사 직원이 수행해야하며 비용은 해당 회원국에서 세금 공제 자격이 없어야함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인정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03년 시행, 2016년 대대적으로 개편	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
기존IP 적용 여부	2016년 개편에 따른 제한 하에 가능	아일랜드 회사가 적격 IP창출을 위해 적격 R&D지출을 하고 IP를 보유한 경우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조상규·곽한김법대,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표 2-7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실효세율	2015년: 적격대상소득 × 21.98% 2016년: 적격대상소득 × 18.84% 2017년 이후: 적격대상소득 × 13.95% (실효세율에는 법인세(IRES)와 지방세(IRAP)가 모두 포함됨. IRES와 IRAP의 일반세율은 각각 27.5%와 3.9%로 총 31.4 %임. 2017년 1월 1일부터 IRES비율은 24%임	적격대상소득 × 5.76% 즉, 적격대상소득의 80% 상당액 면세 (법인세율: 25%, 20만 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과세표준 20%를 적용, 지방사업세와 고용기금 회사 부담액을 더해 법인세율 28.8% 적용, 28.8% × 20% = 5.76%) ※우대세율/부분면세(소득세법 50bis조)
적격IP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저작권, 모델, 디자인, 노하우, 공식, 프로세스 및 라이선스가 있는 IP) 등 잠재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모든 IP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도메인 이름, 모델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적격수입	적격지출(IP의 유지, 증가 또는 개발 비용)과 IP 생산에 발생한 총지출 사이의 비율로 계산	사용료, 양도소득
취득IP	구매 및 라이선스 IP 비용의 30%로 제한됨	직접 관련 없는 회사로부터 취득된 IP는 적용
혜택한도	적격 IP 순이익의 50%로 제한 (2015년 30%, 2016년 40%로 제한)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IP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예: 로열티 없음), 적격 소득 금액은 APA를 기준으로 결정	포함
적격IP 판매이익 포함	적격 IP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자본 이득은 해당 수익의 90% 이상이 판매 후 향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IP의 개발에 재투자되는 경우 과세가 완전히 면제	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인정	인정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불인정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5년	2008년, 2018년
기존IP 적용 여부	기존IP 적용	2007년 12월 31일 이후 개발 또는 취득한 IP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조상규·곽한김법대,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 상표권은 실제로 Patent Box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OECD 권장 사항으로 인해 곧 제외 될 수 있음

표 2-8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몰타	네덜란드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 × (0%~6.25%)	적격대상소득 × 5.0% (법인세율 : 25%, 20만 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우대세율/부분면세(법인소득세법 12B조)
적격IP	특허권,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브랜드, 상표, 상호, 마케팅 관련 IP자산 제외	대규모 납세자: 승인된 R&D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특허 IP(patented IP) 소규모 납세자: 승인된 R&D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된 비특허 IP(non-patented IP)
적격수입	총 특허권 수입	적격 IP의 순이익
취득IP	인정	승인된 R&D 프로젝트 중 추가로 자체 개발된 경우
혜택한도	혜택 제한 없음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불포함	포함
적격IP 판매이익 포함	불인정	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인정	인정. 승인된 R&D 프로젝트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30% 증가 포함)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불인정	제한적으로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0년, 2019년 *2016년 폐지, 2019년 재시행	2007년 개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2008년 개정: 대상자산의 확대(연구개발증명을 취득한 자산의 추가) 2010년 개정: 적용한도(4만 유로) 폐지, 이노베이션박스 제도로 개편 2017년 개정: 넥서스 접근법 및 BEPS 5 적용
기존IP 적용 여부	기존IP 적용	2007년부터 개발 또는 재개발 된 특허 IP: 2008년부터 승인된 R&D 프로젝트의 IP, 2016년 6월 30일의 IP는 Nexus Approach 및 기타 BEPS 5 기준에 따름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조상규·곽현·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표 2-9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포르투갈	스페인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 × 11.5%(50% of CIT)	적격대상소득 × 최소법인세 10%~15% (법인세율 30%) ※우대세율/부분면세(법인세법 23조)
적격IP	특허 받은 발명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모델 및 산업 디자인과 같은 기타 혁신	특허권, 비밀 공식, 프로세스, 계획, 모델, 디자인 및 노하우. 소프트웨어는 제외
적격수입	적격 IP의 총수입. 관련 당사자에 대한 판매 또는 라이선스는 제외	적격 IP의 순이익
취득IP	불인정	제3자에 의해 생성된 부분만큼 법인세 감면이 비례적으로 감소
혜택한도	혜택 제한 없음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불포함	불포함
적격IP 판매이익 포함	인정	인정. 단, 인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자체 개발한 경우	자체 개발한 경우. 자체 개발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선스 부담 비용, 총비용, 취득비용 등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가 감소됨

제2장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의 개요

항목	포르투갈	스페인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제한적으로 인정	제한적으로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4년	2008년 개정: 제도 도입 2016년 7월 개정
기존IP 적용 여부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발된 IP에만 해당	2016년 이전에 개발된 IP 자산은 이전 스페인 특허박스제도를 적용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조상규·곽한·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표 2-10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스위스 (니드발덴 주에만 적용)	터키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 × 8.8% 적격대상소득의 80% 상당액 면세(주세 및 지방세), 연방세 포함 (법인세율 33.99%) ※우대세율/부분면세(니드발덴 주 세법 85조)	적격대상소득 × 10%
적격IP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 또는 모형, 도면, 비밀방식 및 비밀공정, 산업·상업·학술상의 경험 정보 (OECD 모델 조세 조약의 Art 12에 따름)	1. 터키에서 실현된 연구, 개발, 혁신 및 소프트웨어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발명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인정 2. 기술 개발 구역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에서 파생된 라이선스, 특허권, 적용, 개발, 개정, 배포 및 플러그인
적격수입	총 특허 수입(사용료, 양도소득)	적격 IP 순이익
취득IP	인정	TDZ에서는 불인정 법 No.6518에서는 인정
혜택한도	상한선은 없으나 주 세금에만 적용	조건에 따라 다름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불포함	포함
적격IP 판매이익 포함	인정	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니드발덴 주에 있는 회사가 감독한다는 조건으로 인정	불인정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효과적으로 납부된 세금에 한하여 인정	1. 조건에 따라 다름 2. TDZ 제도에서는 불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1년 개정 : 제도 도입(니드발덴 주)	1. 2015년 개정 2. 2001년(TDZ)
기존IP 적용 여부	기존IP 적용	1. 터키에서 연구개발, 혁신 및 소프트웨어 활동을 통해 발생된 IP 수입, 터키 특허연구소에서 특허권이 나 실용신안권을 받은 IP 수입에 대해 인정 2. 테크노파크에서 수행된 R&D 활동에서만 발생하는 IP 수입에 대해 불인정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조상규·곽한·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표 2-11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영국	이스라엘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 × 최소 10% (법인세율: 19%) ※우대세율/부분면세(법인세법 8A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글로벌 통합 매출이 ILS100억 (US\$25억) 이상인 그룹에 속한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 기업 12%: 글로벌 통합 수익이 ILS100억 미만인 기타 적격 기업 7.5%: ILS100억 미만인 기타 적격 기업 중 이스라엘 회사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특정 북부 또는 남부 지역에 위치한 경우 4%의 감소를 적용: 해외 주주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규모 또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적격기업에 감소율 적용
적격IP	특허권, 추가 보호 인증서, 식물품종보호권, 특정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없음. 외국인 거주자에게 산업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고 과학자 사무실"로 승인받아 세금감면을 받음 Patent Box 제도는 외국 거주자에게 산업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 즉, IP는 외국 기업이 소유함
적격수입	사용료, 양도소득, 판매소득, 자사 사업 사용에 따른 소득, 특허권 침해에 관계된 배상금. 넥서스접근법을 채택하여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이 납세자의 R&D 비용과 연결됨	외국인을 위한 산업 R&D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취득IP	인수 후 추가 개발한 부분 단, 인수회사가 인수전에 R&D를 수행했다면, 이를 넥서스 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	인수 후 추가 개발한 부분
혜택한도	적용 한도 없음 (경과조치 :2014년 60% → 2017년 100%)	적용 한도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포함	포함
적격IP 판매이익 포함	인정	불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납세자가 연구개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	제한적으로 인정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인정	불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2년 개정: 제도 도입 2013년 4월 1일 제도 시행	2004년 : 제도 도입 2017년 1월 1일 : 넥서스접근법 수용, 혁신박스제도로 전환
기존IP 적용 여부	인정	불인정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조상규·곽현·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제 3 절

특허박스제도 관련 선행 연구

1 특허박스제도 관련 선행연구

- 김학수(2007)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인해 낮아지게 된 사용자비용에 반응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 지에 관해 분석함
 -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1% 사용자비용을 감소시킬 때 0.5~1.1%의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며, 1%의 정부 직접보조금을 증가시키면 0.06~0.07%의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 투자를 감소시킴
 - 즉,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지만 직접보조금은 오히려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그 경비를 다른 용도로 대체하게 됨
 - 기업규모별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장기탄력성이 대기업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상현·손원익(2006)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연구개발비 지출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줌
- Karkinsky and Riedel(2012)의 연구에서는 법인세율과 다국적기업 계열사의 특허출원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짐. 법인세율이 높으면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Griffith et al.(2014)은 특허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은 신규 지식재산을 보유할 지역 선택 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가의 조세 수입은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고 주장함
- Bradely Dauchy & Leslie Robinson(2015)는 특허박스제도에서 특허 소득 세율이 1%p 감소할 경우 신규 특허출원이 3% 증가한다고 분석, 지식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이 낮을수록 무형자산의 이전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임

2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

- EU(2016)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혁신성과지수(Innovation Performance Index)*가 비도입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도입국 평균 혁신지수는 0.541로 EU평균 0.521 보다 높았고, 미도입국 평균은 0.430으로 도입국에 비해 혁신지수가 낮음**

* EU가 매년 EU회원국의 혁신활동성과지수 등 25개 부분을 평가하여 지수로 발표함

** EU, Innovation Union Scordboard 2016, 2016

표 2-12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도입국가	지수	미도입국가	지수	미도입국가	지수
네덜란드	0.631	스위스	0.791	이탈리아	0.432
아일랜드	0.609	스웨덴	0.704	포르투갈	0.419
벨기에	0.602	덴마크	0.700	그리스	0.364
영국	0.602	핀란드	0.649	슬로바키아	0.350
룩셈부르크	0.598	독일	0.632	세르비아	0.325
프랑스	0.568	오스트리아	0.591	폴란드	0.292
스페인	0.361	이스라엘	0.581	리투아니아	0.282
헝가리	0.355	아이슬란드	0.572	라트비아	0.281
		슬로베니아	0.485	크로아티아	0.280
		노르웨이	0.463	터키	0.267
		키프러스	0.451	불가리아	0.242
		에스토니아	0.448	마케도니아	0.220
		몰타	0.437	루마니아	0.180
		체코	0.434	우크라이나	0.178
도입국 평균**	0.541	미도입국 평균**	0.430		
EU 평균	0.521				

* 스위스처럼 지역구에서만 시행하거나 이탈리아(2015년 시행), 포르투갈(2016년 시행)처럼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미도입국으로 분류

** 두 그룹의 t-test 결과 t=1.710, p-value=0.05로 그룹 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EU, Innovation Union Scordboard 2016, 2016;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2.(재인용); 조상규·곽현·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 유경진(2017)에서, 2011~2015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연평균증가율이 평균 3.8%,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은 10.8%, 미도입국은 -8.0%로 나타남

표 2-13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특허박스제도 도입국*	252,182.4	188,790.0	274,878.7	158,244.5	380,083.5	10.8
특허박스제도 미도입국**	197,776.3	120,402.4	60,628.4	99,874.1	141,713.6	-8.0
EU***	449,958.7	309,192.4	335,507.1	258,118.6	521,797.1	3.8

*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등 8개국. 스위스처럼 지역구에서만 시행하거나 이탈리아(2015년 시행), 포르투갈(2016년 시행)처럼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미도입국으로 분류

**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16개국

*** 상기 24개국 총합

출처: OECD(2016), FDI flows(indicator). doi: 10.1787/99f6e393-en(Accessed on 14 December 2016); 유경진(2017) 재인용; 조상규곽현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제 4 절

특허박스제도 도입에 관한 논거

-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에 있어 우리의 경제·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석되어야 하고, 국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착근되기 위해 재설계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임
- 특허박스제도에 관한 논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원형 자체로나 혹은 유럽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임
- 기존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R&D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해외 특허박스제도 도입국들이 R&D 세액공제, R&D 추가비용공제, 특허박스제도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음

표 2-14 해외 주요국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R&D 세액공제 (R&D Incentives)	R&D 추가비용공제 (R&D Super Deduction)	특허박스제도 (Patent or Innovation Box)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	○*
브라질		○	
캐나다	○		
중국		○	○
체코		○	
덴마크	○**		
프랑스	○		○
헝가리	○	○	○
인도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		
카자흐스탄		○	

	R&D 세액공제 (R&D Incentives)	R&D 추가비용공제 (R&D Super Deduction)	특허박스제도 (Patent or Innovation Box)
한국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몰타	○	○	○
네덜란드	○***		○
폴란드		○	
포르투갈	○		○****
루마니아		○	
러시아		○	
싱가포르		○	
슬로바키아		○	논의 중
남아프리카		○	
스페인	○		○
스위스			○
터키	○	○	○
영국	○*****	○	○
미국	○		

* 벨기에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특허소득공제제도(PID)가 폐지되고 혁신소득공제제도(IID)로 대체됨.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요청하거나 취득한 특허(보조보호인증서 포함)의 경우 납세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구PID 제도를 계속 적용 할 수 있음.

** 덴마크는 R&D 비용의 즉각적인 공제로 인해 현재 평가 연도에 발생한 손실의 세금 가치로 최대 2,500만 DKK로 제한됨.

***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이전의 R&D추가비용공제가 R&D 세액공제에 통합됨.

**** 포르투갈은 2014년 1월 이후에 생성된 IP에 대해 Patent Box 제도를 적용.

***** 영국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대기업의 지출에 대하여 새로운 R&D 세액공제를 도입함. 이 제도는 처음에는 대기업에 대한 R&D추가비용공제와 함께 실행되었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는 의무화됨.

출처: 조상규·곽현·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 기존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 중복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급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 보다는, 유럽 국가에서 왜 이렇게 R&D 세액공제, R&D 추가비용공제, 특허박스제도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비판은 기존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R&D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것임
-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과, 그 특허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며,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별도로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특허박스제도로 인해 단기적으로 조세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수익의 기반을 강화해 조세손실을 보전하거나 조세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

미래전략

국가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제 3 장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안)

- 제1절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설계(안)
- 제2절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안) 조세감면액 추계

제 1 절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안) 설계

1 (1안)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의 특허박스제도 적용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혹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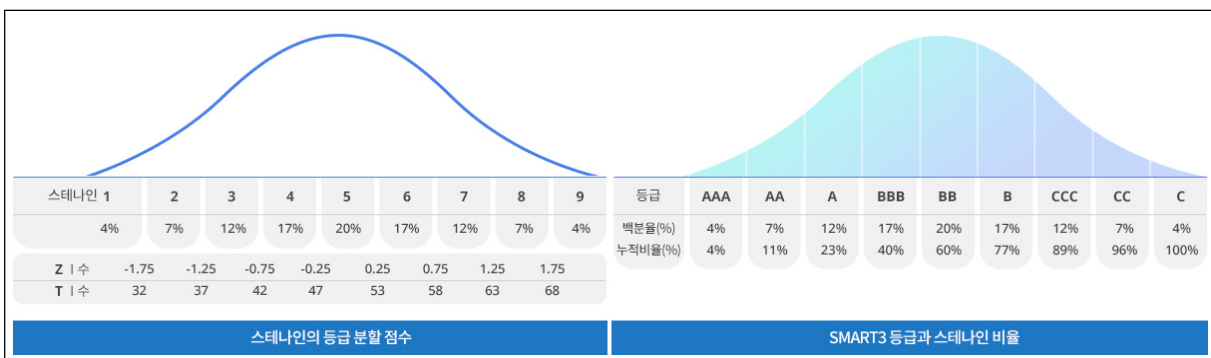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별표7의 정의를 따름(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 단,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25%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함

- **(우수특허 보유 및 활용)** 신성장동력산업 중 발명진흥회의 SMART3 평가 인증에서 AAA, AA, A, BBB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특허를 보유하고,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 50% 감면

* SMART3 등급별 분포를 보면 AAA(4%), AA(7%), A(12%), BBB(17%) 등의 정규분포 형태를 가지고, 우수특허범위로 AAA, AA, A, BBB 등급까지 한정하면 40% 비중이 우수특허 범위가 됨

그림 3-1 SMART3 등급별 비율



출처: 발명진흥회 SMART3 특허평가분석시스템 홈페이지

모형 (1)안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begin{aligned} \text{조세감면액} &= \text{신성장동력산업 법인세} \times \text{SMART3 우수특허 비율} \times \text{법인세감면비율}^{1)} \\ &= \text{중소기업 총부담세액}^{2)} \times \text{신성장동력산업 비율}^{3)} \times \text{SMART3 우수특허 비율}^{4)} \times \text{법인세감면비율} \end{aligned}$$

- 1) 법인세감면비율 : 50% 감면
- 2) ①중소기업, ②중소기업+중견기업, 두 경우의 총부담세액을 각각 구함
-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 금액 비율로 신성장동력산업 비율을 구함
- 4) SMART3 우수특허 비율 : 40% (AAA, AA, A, BBB 비율)

2 (2안) 특허사업화 대상 특허박스제도 적용 (중소기업 한정)

-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50%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 BEPS Project의 제안 요건을 따라 Nexus approach를 적용함
- 넥서스 접근법은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특례제도를 적용(nexus ratio) 지식재산 소득 중 지식재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지식재산에 기여한 연구개발 지출에 비례함
- 수정된 넥서스접근법의 요건에 따라 적격비용의 30%를 증액(30% up-lift) 요건 적용
- 법인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지만, 연구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다수가 분포된 법인세율 20%(과세표준구간 2억초과~200억이하)를 적용함
 - * 중소기업 평균 실효법인세 비율이 2019년 기준 16.8%임
- IP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은 국내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비중(서울신용평가)과 무형자산 중 IP 비중 (S&P500), 중소기업 과세표준액을 곱하여 추정함

모형 (2)안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비용혜택연계접근법 활용)

$$\text{조세감면액} = (\text{nexus ratio} \times 1.3)^{1)} \times \text{평균과세비율}^{2)} \times \text{법인세감면비율}^{3)} \times \text{IP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4)}$$

- 1) $(\text{nexus ratio} \times 1.3) \leq 1$
 - 적격비용의 30% 증액(30% up-lift) 요건 적용
 - 본 연구에서는 nexus ratio의 추계에서 데이터의 제약조건으로 $(\text{nexus ratio} \times 1.3) = 0.8$ 로 가정
- 2) 중소기업의 다수가 법인세율 20%인 과세표준구간 2억초과~200억이하에 포함됨
 - * 중소기업 평균 법인세는 2019년 기준 16.8%임
- 3) 법인세감면율 : 50% 감면
- 4) IP 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 = 특허의 기여로 인한 소득
 - = 무형자산 가치 31% × 무형자산 중 IP 비중 40% × 중소기업 과세표준액 (서울신용평가) (S&P500 기준) (2019년 기준)
 - S&P500 기업 시장가치 기준(2020) : 무형자산 비율 90%, 무형자산 중 IP자산 비중 40%
 - 서울신용평가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2016)※ : 무형자산 비율 31%
 - ※ 서울신용평가,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 2017.

제 2 절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안) 조세감면액 추계

1 데이터

-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법인세(2016~2019)
- NICE신용평가(주), 외감기업 재무정보(2016~2019)
- 특허청 특허정보(2016~2019)
- 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3 평가정보(2016~20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을 아래 표에서 구할 수 있음

표 3-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015~2017)

year	구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청기업수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	신청기업수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
2015	중소기업	119	43,047	12,914	24,488	5,931,972	1,482,993
	중견기업	19	87,504	17,501	1,067	1,931,846	170,078
	중소중견	138	130,551	30,415	25,555	7,863,818	1,653,071
2016	중소기업	134	74,782	22,434	28,706	6,645,549	1,684,546
	중견기업	17	28,483	5,697	1,014	1,944,688	187,050
	중소중견	151	103,265	28,131	29,720	8,590,237	1,871,596
2017	중소기업	155	99,329	29,799	31,689	7,095,464	1,799,289
	중견기업	25	40,809	8,162	1,095	2,156,610	203,489
	중소중견	180	140,138	37,961	32,784	9,252,074	2,002,778

출처: 국세통계

표 3-2 기업의 평균 부담세액, 특허박스혜택 법인수, 특허박스혜택 감면액 계산식

구분	내용
③ 평균부담세액(백만원)	② 총부담세액 / ① 법인수
⑨ 특허박스혜택 법인수	①법인수 × ④신성장동력산업비율 × ⑤특허보유비율 × ⑥특허사업화비율 × ⑦SMART3우수특허비율
⑩ 특허박스혜택 법인당 감면액(백만원)	⑧ 조세감면액 / ⑨ 특허박스혜택 법인수

2 (1안) 신성장동력산업 특허박스제도 적용 조세감면액

- 2022년 기준 신성장동력산업 특허박스제도 적용 시, 50%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261개사가 1,900만 원씩 총 50.5억 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음
- 중견기업은 25%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21개 기업이 3.5억원씩 총 74.5억 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음
-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총 125억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3-3 (1안) 특허박스제도 조세감면액

year	순서	총부담세액		평균 부담세액 (백만원)	신성장 동력산업 비율	특허보유 기업비율	특허 사업화율	SMART3 우수특허 비율	조세 감면액 (백만원)	특허박스혜택(백만원)	
		법인수	금액 (백만원)							법인수	법인당 감면액
2021	중소기업	419,250	16,622,830	40	1.10%	19.02%	69.18%	39.9%	4,524	242	19
	중견기업	3,530	5,387,819	1,526	2.50%	85.69%	63.95%	39.9%	6,841	19	355
	중소+중견	422,780	22,010,650	52	1.40%	21.93%	66.63%	39.9%	11,366	345	33
2022	중소기업	451,424	18,848,482	42	1.10%	19.02%	69.18%	39.9%	5,050	261	19
	중견기업	3,861	5,994,906	1,553	2.50%	85.69%	63.95%	39.9%	7,453	21	353
	중소+중견	455,285	24,843,388	55	1.40%	21.93%	66.63%	39.9%	12,503	372	34
2023	중소기업	486,068	21,372,129	44	1.10%	19.02%	69.18%	39.9%	5,636	281	20
	중견기업	4,222	6,670,398	1,580	2.50%	85.69%	63.95%	39.9%	8,119	23	352
	중소+중견	490,290	28,042,527	57	1.40%	21.93%	66.63%	39.9%	13,756	400	34
2024	중소기업	523,370	24,233,671	46	1.10%	19.02%	69.18%	39.9%	6,291	302	21
	중견기업	4,617	7,422,002	1,607	2.50%	85.69%	63.95%	39.9%	8,845	25	350
	중소+중견	527,987	31,655,673	60	1.40%	21.93%	66.63%	39.9%	15,136	431	35
2025	중소기업	563,535	27,478,348	49	1.10%	19.02%	69.18%	39.9%	7,021	325	22
	중견기업	5,049	8,258,296	1,636	2.50%	85.69%	63.95%	39.9%	9,637	28	349
	중소+중견	568,584	35,736,644	63	1.40%	21.93%	66.63%	39.9%	16,658	464	36

주: 1. 2015~2019년 5년간 중견기업(8.94%), 중소기업(11.61%)의 과세표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2020년~2026년까지 과세표준을 연장 추계함
 2. 신성장동력산업 비율은 2015~2017년 기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와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3. SMART3 우수특허비율은 2016년~2020년 기준 SMART3 종합평가 등급에서 AAA, AA, A, BBB 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평균 비율(40%)
 4. 법인세 감면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5%로 함
 5.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외국납부세액 제외
 6. 특허보유기업 비율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NICE신용평가(주) 데이터(2016~2019)와 특허청의 특허등록정보(2016~2019)를 연계하여 비중을 구함
 7. 특허사업화율은 특허청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보고서(2016~2019)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평균 특허사업화율을 구함

3 (2안) 특허사업화 대상 특허박스제도 적용 조세감면액(중소기업)

표 3-4 특허박스 감면혜택 추계식

구분	내 용
① 과세표준	⑥ 일반소득 + ⑦ 적격 IP소득
② 무형자산 가치*	31% (서울신용평가 기준)
③ 무형자산 중 IP 비중**	20% (S&P500 기준의 1/2)
④ IP 중 특허 비중	50%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
⑤ nexus ratio	(nexus ratio × 1.3) ≤ 1 - 적격비용의 30% 증액(30% up-lift) 요건 적용 - 개별 기업의 nexus ratio의 추계의 한계로, (nexus ratio × 1.3) = 0.8 로 가정
⑥ 일반소득	
⑦ 적격 IP소득	①과세표준 × ②무형자산가치 × ③무형자산 중 IP비중 × ④IP 중 특허비중 × ⑤평균 nexus ratio ※ ② × ③ × ④ × ⑤ = 2.48
⑧ 실효세율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외국납부세액 제외 = 13.04%
⑨ 특허박스 세율	일반세율의 50% 적용 = 과세표준 중위값(20%) × 50% = 10%
⑩ 특허박스 감면세율	PB감면세율 = ⑥실효세율(13.04%) - ⑨특허박스세율(10%) = 3.04%
⑪ 특허박스 실효세액공제액	⑦적격IP소득 * ⑩ 특허박스 감면세율

* 무형자산 가치(서울신용평가)의 경우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만으로 좁혀서 평가할 경우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무형자산 중 IP 비중(S&P500 기준)은 글로벌 첨단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S&P500 비중의 1/2로 가정함

표 3-5 용어 설명

구분	내 용
소득	총수입 - 비용, 총매출액 - 비용 (일반소득 + IP소득)
총수입	입금산입 + 손금불산입
과세표준	직전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단계별 세율 (일반소득 × 일반세율) + (IP소득 × Nexus Ratio × 1.3 × PB세율)
총부담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액)
세액공제	세액 × 공제율
세액감면	과세표준 × 감면율

- 중소기업 5년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 (13.04%)
- nexus ratio의 30%up-lift를 0.8로 가정, 무형자산가치, 무형자산 중 IP비중, IP 중 특허비중의 곱에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적격IP소득을 추계

- 특허박스 감면세율은 중소기업 5년평균 실효세율에서 특허박스세율의 차이를 통해 구함
-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특허사업화에 대한 특허박스제도 적용 조세감면액은 1,010억 원으로 추계됨

표 3-6 중소기업 특허사업화 대상 특허박스제도 적용 조세감면액 추계

	① 과세표준	⑧ 실효세율 (중소기업 5년평균)	⑦ 적격IP소득 (과세표준*2.48%)	⑩ PB감면세율 (실효세율-PB세율)	⑪ 특허박스 실효세액공제액
2021	120,199,214	13.04%	2,980,941	3.04%	90,489
2022	134,155,877	13.04%	3,327,066	3.04%	100,996
2023	149,733,086	13.04%	3,713,381	3.04%	112,723
2024	167,119,008	13.04%	4,144,551	3.04%	125,812
2025	186,523,658	13.04%	4,625,787	3.04%	140,420

미래전략

국가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제 4 장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제2절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1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세액감면액 추계

1) 실증분석 모형

-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 취지의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도입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 예측이라는 특성상 본 제도의 비용과 편익은 모두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추정함
-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의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게 있어 법인세 감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기업의 법인세 증감에 따른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 특허창출 등의 변화를 추정함
- 본 연구는 (1안)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성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산업(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과 (2안)혁신활동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중소기업 전체에 대하여 분석함

(1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산업		(2안)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②중소중견기업	
우수특허를 보유하고서 우수특허를 활용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		특허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25% 감면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가짐
 - (연구가설1) 법인세 증감은 매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연구가설2) 법인세 증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연구가설3) 법인세 증감은 특허창출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연구가설4) 신성장동력산업이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법인세 증감에 대한 매출액, 연구개발비, 특허등록수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

- 특허박스제도는 이미 달성된 R&D 성과물인 특허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임
- 창출된 특허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제도를 통해 특허를 통한 사업화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특허박스제도의 적용 방법은 특허를 통한 사업화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를 50% 감면함
- 기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 관련 조세제도에서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단순히 기업의 소득 증대로 변질되어 이용되지 않고, 연구개발비의 재투자 등으로 조세제도의 목적에 따라 효과가 발생됨
-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시행된 바가 없는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제도여서 비교 대상이나 참고할 데이터가 부재한 조건으로,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의 매출액, R&D 투자, 특허창출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고자 함
- 매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음

[모형] 매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 분석 모형

$$Sales_t = c + \beta_1 Tax_{t-1} + \beta_2 RD_t + \beta_3 RD_{t-1} + \beta_4 LEV_{t-1} + \beta_5 Asset_t + \beta_6 Labor_t + \beta_7 Profit_t + \beta_8 Profit_{t-1} + \beta_9 Invest_t + \beta_{10} Invest_{t-1} + \beta_{11} Patent_t + \beta_{12} Patent_{t-1} + \beta_{13} SMART3_t + \beta_{14} SMART3_{t-1} + \epsilon$$

주: Sales: 매출액, Tax:법인세, RD:연구·인력개발비, LEV:부채비율, Asset:총자산, Labor:종사자수, Profit:영업이익, Invest:투자액, Patent:특허등록건수, SMART3:우수특허보유건수, ϵ :오차항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음

[모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 분석 모형

$$RD_t = c + \beta_1 Tax_t + \beta_2 Tax_{t-1} + \beta_3 RD_{t-1} + \beta_4 LEV_t + \beta_5 Asset_t + \beta_6 Labor_t + \beta_7 Labor_{t-1} + \beta_8 Profit_t + \beta_9 Profit_{t-1} + \beta_{10} Sales_t + \beta_{11} Sales_{t-1} + \beta_{12} Invest_t + \beta_{13} Invest_{t-1} + \beta_{14} Patent_t + \beta_{15} Patent_{t-1} + \beta_{16} SMART3_t + \beta_{17} SMART3_{t-1} + \epsilon$$

주: Tax:법인세, RD:연구·인력개발비, LEV:부채비율, Asset:총자산, Labor:종사자수, Profit:영업이익, Sales: 매출액, Invest:투자액, Patent:특허등록건수, SMART3:우수특허보유건수, ϵ :오차항

- 특허창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음

[모형] 특허창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 분석 모형

$$Patent_t = c + \beta_1 Tax_t + \beta_2 RD_t + \beta_3 RD_{t-1} + \beta_4 RD_{t-2} + \beta_5 LEV_t + \beta_6 Asset_t + \beta_7 Profit_t + \beta_8 Profit_{t-1} + \beta_9 Sales_t + \beta_{10} Sales_{t-1} + \beta_{11} Patent_t + \beta_{12} Patent_{t-1} + \beta_{13} SMART3_t + \beta_{14} SMART3_{t-1} + \epsilon$$

주: Patent:특허등록건수, Tax:법인세, RD:연구·인력개발비, LEV:부채비율, Asset:총자산, Profit:영업이익, Sales: 매출액, SMART3:우수특허보유건수, ϵ :오차항

2) 분석자료

- 분석자료는 Kis-Value의 외부감사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자료 및 법인세, 연구개발비, 발명진흥회의 SMART3 평가, 특허청의 특허출원·등록 정보를 이용함
- 2016년~2019년까지의 분석기간에 28,710개의 기업 중 활용 가능한 기업 3,714개에 대한 불균형패널 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 활용
- 분석기간은 2016~2019년 4년간, 분석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해당 기업(세분류 기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외부감사기업 대상 : ▲자산 12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 70억 원 이상이면서 자산이 70억 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 매출 창출 효과

1)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

- 법인세 감면에 대한 매출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법인세 감면 대비 중소기업은 3.67배, 중견기업은 4.99배, 중소·중견기업 전체의 경우 4.58배 수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생산규모와 관련이 있는 부채비율, 총자산, 종사자수 등은 모두 매출 증가와 정(+)의 관계를 나타냄
 -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은 전기(t-1)의 부채비율이 1% 포인트 커지면 매출액이 평균 53.6억 원 증가, 중소기업은 38.5억 원, 중견기업은 105억 원 증가함
 - 총자산이 1단위 증가할 때, 중소·중견기업은 증가한 총자산의 22.5%, 중소기업은 20.5%, 중견기업은 25.9% 만큼 증가함
- 당기(t)나 전기(t-1)에 발생한 영업이익이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t)에 발생한 영업이익에 비해 2.7배, 중견기업은 1.8배의 매출 증대가 발생함
- 투자증가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3% 매출 증대를 가져옴
- 신규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7.5억 원의 매출 증가, 중소·중견기업 전체로는 2.2억 원의 매출 증가가 나타남
- 전기(t-1)에 신규로 우수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18.1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2) 신성장동력산업 우수특허 추가 등록기업 vs. 미등록기업

- [표 4]에서 우수특허 등록 여부에 따른 구분은 특허보유(저량, stock)의 개념이 아니라 추가 등록(유량, flow)의 개념으로 구분함

- 당기(t) 우수특허를 등록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대비 매출액 증대가 4.1배, 우수특허 미등록 기업은 3배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의 생산규모와 관련이 있는 부채비율, 총자산, 종사자수 등에서도 우수특허 등록 기업이 미등록기업에 비해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남

3) 중소기업 전체

-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에 대한 매출 창출 효과를 보면, 법인세 감면 대비 2.2배 수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신성장동력산업에 비해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남
- R&D투자에 대한 매출액 증가 효과는 당기(t) 4.6배, 전기(t-1) 1.35배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의 생산규모와 관련이 있는 부채비율, 총자산, 종사자수 등에서도 매출 창출 효과는 정(+)의 효과를 나타냄
- 당기(t) 영업이익에 따른 매출증가는 3.27배로 나타남
- 신규 특허등록에 따른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는 2.8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기(t)에 신규로 우수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39.1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가지고, 전기(t-1)에 신규 우수특허 등록 효과는 23.3억 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표 4-1 법인세 감면을 통한 매출 창출 효과

	(1인) 신장동력산업												(2인)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수특허 등록			우수특허 미등록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법인세(t-1)	-4.575914	0.000***		-3.665975	0.012**		-4.985721	0.009***		-4.116921	0.156		-3.066236	0.016**		-2.217361	0.000***
R&D(t)																4.621062	0.000***
R&D(t-1)																1.351045	0.000***
부채비율(t-1)	5.36e+09	0.000***		3.85e+09	0.001***		1.05e+10	0.020**		2.51e+10	0.000***		4.65e+09	0.001***		7.79e+08	0.017**
총자산(t)	0.2245808	0.000***		0.204912	0.000***		0.2588559	0.000***		0.4705372	0.000***		0.2158101	0.000***		0.267454	0.000***
중사자수(t)	5.27e+07	0.000***		9.73e+07	0.000***					1.38e+08	0.024**		5.18e+07	0.000***		3.00e+07	0.000***
영업이익(t)	2.250153	0.000***		2.699037	0.000***		1.839379	0.000***		1.739105	0.002***		2.35305	0.000***		3.26951	0.000***
영업이익(t-1)	0.7453468	0.000***		0.634795	0.020***		0.8091439	0.020**		1.574939	0.046**		0.3119105	0.197			
순투자(t)	0.1316086	0.008**		0.105622	0.096*								0.128953	0.028**			
순투자(t-1)				0.1349353	0.052*												
특허등록(t)	2.24e+08	0.045**		7.52e+08	0.001***								3.85e+08	0.089*		2.76e+08	0.046**
특허등록(t-1)	2.47e+08	0.027**								4.67e+08	0.028**		4.54e+08	0.034**			
SMART3																3.91e+09	0.000***
SMART3(t-1)				1.81e+09	0.063*					-4.53e+09	0.000***					2.33e+09	0.000***
C	3.38e+10	0.000***		3.05e+09	0.335		1.16e+11	0.000***		-2.21e+10	0.281		3.19e+10	0.000***		7.21e+09	0.000***
R2	0.7814			0.5991			0.5367			0.7323			0.7684			0.5366	
관측치	2,069			1,491			578			80			1,786			3,714	

표 4-2 법인세 감면을 통한 R&D 창출 효과

	(1인) 신성장동력산업												(2인)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수특허 등록			우수특허 미등록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법인세(t-1)	-0.3362	0.000***		-0.2778	0.004***		-0.6049	0.060*		-2.103	0.098*		-0.027	0.481	0.2046	0.000***	
법인세(t)															0.0603	0.002***	
R&D(t-1)	1.104922	0.000***		0.1202322	0.001***		1.085084	0.000***		1.064421	0.000***		1.120471	0.000***	0.0513626	0.023**	
부채비율(t)							-357,034,400	0.469		-3,662,269,000	0.094*						
총자산(t)				0.00680	0.003***												
종사자수(t)				5,341,967	0.000***		934,968	0.676							1,703,132	0.000***	
종사자수(t-1)															1,487,620	0.003***	
영업이익(t)				-0.0241	0.017*												
영업이익(t-1)				0.0591	0.002***												
매출액(t-1)				0.00646	0.023**												
매출액(t)							0.00225	0.629									
순투자(t)							-0.0253	0.383					8.74e-03	0.090*	0.00708	0.000***	
순투자(t-1)	0.0355	0.003***					0.0695	0.017**		0.3069	0.047**				0.00736	0.000***	
특허등록(t)				13,179,820	0.401		-42,810,240	0.325					49,258,910	0.000**		0.046**	
특허등록(t-1)	149,119,800	0.000***		-31,428,930	0.036**		226,369,300	0.000***		501,088,900	0.000***				5,311,319	0.556	
SMART3				236,406,500	0.011**		-601,309,000	0.088									
SMART3(t-1)	247,243,100	0.070*		124,932,100	0.096		893,683,500	0.007***							1,010,037	0.981	
C	-201,502,500	0.097		129,539,400	0.467		-195,765,200	0.856		255,314,400	0.948		-156,604,200	0.007***	426,187,100	0.000***	
R2	0.9714			0.5704			0.9714			0.9773			0.9454		0.4286		
관측치	2,069			1,491			578			80			1,786		3,714		

2 R&D 창출 효과

1)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한 R&D 창출 효과는 중소·중견기업을 통틀어서 33.6%, 중소기업은 27.8%, 중견기업은 6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R&D는 연속적인 성격이 있어서, 전기(t-1)의 투자가 당기(t)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전기(t-1)의 R&D 투자가 당기(t)에 미치는 영향이 중소·중견기업은 1.1배, 중견기업은 1.08배, 중소기업은 0.12배 수준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R&D 투자가 연속성을 가지는 정도가 중견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신규 특허등록에 대한 R&D 창출 효과는, 중소기업은 전기(t-1)에 신규특허 등록시 당기에 R&D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t-1) 특허등록 후에 추가적인 R&D투자보다는 사업화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영상 여유가 있어 전기(t-1)의 신규 특허등록에 대해 당기(t)에 R&D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남
- 신규 우수특허 등록 시에도 R&D 투자 효과가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중소기업 당기(t)에 신규 우수특허 등록 시 R&D 투자를 2.36억 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중견기업은 전기(t-1)에 신규 우수특허 등록 시 8.9억 원의 R&D 투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2) 신성장동력산업 우수특허 추가 등록기업 vs. 미등록기업

- 신규 우수특허 등록 기업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 2.1배의 매우 높은 R&D 파급효과가 나타남
- 신규 우수특허 등록 기업은 전기(t-1) 특허등록 시 R&D 투자 효과가 5억 원으로 나타남
 - 우수특허 미등록 기업은 당기(t)에 특허등록 시 R&D 투자 효과가 49백만 원으로 나타남

3) 중소기업 전체

-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에 대한 R&D 창출 효과가 법인세 감면 대비 20.5% 수준으로 신성장동력산업에 비해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남
 - 전기(t-1)의 법인세 감면에 대한 R&D 창출 효과는 6%로 나타남

표 4-3 법인세 감면을 통한 특허 창출 효과

	(1인) 신성장동력산업												(2인)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수특허 등록			우수특허 미등록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법인세(t-1)	-1.01e-09	0.031**		1.10e-10	0.95		-1.69e-09	0.040**		-3.34e-09	0.097*		-2.28e-10	0.348		-8.86e-11	0.291
R&D(t)													0.000157	0.218			
R&D(t-1)	-0.000124	0.079*		0.000138	0.017**					0.0000537	0.029**		-0.000428	0.004***			
R&D(t-2)	-0.0000875	0.082*															
부채비율(t)							5.56394	0.036**					1.846053	0.001***			
총자산(t)										3.23e-11	0.202						
영업이익(t)	1.36e-10	0.031**															
영업이익(t-1)										2.00e-10	0.590						
매출액(t)				1.82e-11	0.000***					1.26e-11	0.570						
매출액(t-1)	3.57e-12	0.830											5.34e-12	0.572			
특허등록(t-1)	-0.1518466	0.037**		0.3123325	0.000***		-0.2112861	0.058*		0.4936617	0.000***		-0.3323181	0.000***		-0.5319768	0.000***
특허등록(t-2)				0.2265931	0.000***		0.1616337	0.158					-0.1007514	0.059*		-0.0947821	0.014**
SMART3				1.320402	0.002***		-1.530902	0.020**		2.980956	0.000***					1.371092	0.000***
SMART3(t-1)	-2.045241	0.000***															
C	5.478394	0.002***		-0.4669866	0.002***		8.848231	0.006***		-3.630179	0.303		1.437817	0.155		2.188803	0.000***
R2	0.3792			0.5534			0.0389			0.7747			0.4259			0.4023	
관측치	991			681			310			80			806			1,688	

3 특허 창출 효과

1)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

- 2019년 기준, 정부 R&D 20.5조, 국가 전체 R&D 투자는 89조 471억 원이고, 특허등록수는 125,661건으로 나타남
 - 국내 R&D 투자 대비 특허등록수는 0.14건/억 원
- 이에 비교하여 법인세 감면에 따른 특허창출 효과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0.101건/억 원, 중견기업은 0.169건/억 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효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2) 신성장동력산업 우수특허 추가 등록기업 vs. 미등록기업

- 신규 우수특허 등록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대비 특허등록수가 0.334건/억 원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신규 우수특허 등록 시 3개의 특허등록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중소기업 전체

-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우수특허 등록 시 1.37건의 특허등록 창출 효과가 나타남

미래전략

국가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법인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적용 시 예상되는 법인세 감면액을 적용하여 매출 창출 효과, R&D 창출 효과, 특허 창출 효과를 추계함
- (1안)의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중소기업에 50.5억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주어질 경우 매출, R&D, 특허 창출 효과는 각각 185억 원, 14억 원, 0.6건으로 나타남
- (1안)의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모두를 포함할 경우 125억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주어질 경우 매출, R&D, 특허 창출 효과는 각각 557억 원, 59억 원, 13.2건으로 나타남
- (2안)의 중소기업 전체에 대하여 1,010억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주어질 경우 매출, R&D, 특허 창출 효과는 각각 2,242억 원, 206.6억 원, 8.9건으로 나타남

표 5-1 법인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감면액 (백만원)	매출 창출 효과 (백만원)	R&D 창출 효과 (백만원)	특허 창출 효과 (건)
(1안) 신성장동력 산업	중소 기업	5,050	3.67*5,050 = 18,533.5	0.2778*5,050 = 1,402.89	1.10e-10*5,050 = 0.6
	중견 기업	7,453	4.99*7,453 = 37,190.47	0.6049*7,453 = 4,508.32	1.69e-09*7,453 = 12.6
	중소 중견 기업	12,503	55,723.97	5,911.21	13.2
(2안) 중소기업 전체	100,996	2.22*100,996 = 224,211.12	0.2046*100,996 = 20,663.78	8.86e-11*100,996 = 8.9	

2 연구의 한계

- 특허박스제도는 미활용 특허의 활용과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조세지원을 통하여 이를 촉진하고자 함
- 국내에서는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한 경우가 없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없음
- 특허박스제도가 시행되면 특허 사업화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혜택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허활용(사업화 및 기술거래) → 특허창출(특허출원등록) → 연구개발활동』의 순으로 조세혜택의 파급효과가 차등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법인세 감면효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특허박스제도에서 목적하는 “사업화 지원” 이라는 강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성된 결과이므로, 분석결과 보다도 제도시행 시 사업화를 통한 ①매출증대, ②특허출원·등록, ③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항목에 있어 기업에 미치는 실효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
- 이제까지 특허사업화에 대한 조세제도가 선행되지 않아 이러한 활동에 미치는 정확한 가중치를 계산하지는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향후 연구 과제로 둬

참고문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년 기반전문위원회 정책이슈 발굴 연구, 2014.
- 류태규, 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문은희, 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입법과제, 2019.
- 박진석, 유럽지재권 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제도, 과학기술정책, 2014
-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2017.
- 조상규·곽현·김범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 Bob Stembridge, Thomson Reuters, Patent Box Incentives show positive signs, 2015
- Bradley, S. E. Dauchy & L. Robinson (2015),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Preliminary Effects of Patent Box Regimes on Patent Activity and Ownership, Tuck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No. 2681433, 2015, note 15, p. 6.
- Esmé Berkhout, Tax Battles: The Dangerous Global Race to the Bottom on Corporate Tax (December 2016), 19
- EU, Innovation Union Scordboard 2016, 2016
- Fabian Gaessler, Bronwyn H Hall and Dietmar Harhoff, Should There Be Lower Taxes on Patent Income?, 2018, 44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216471>
- Griffith, C. A., Lloyd, J. W., Lane, K. L., and Tankersley, M., “Grade retention of students during grades K-8 predicts reading achievement and progress during secondary schooling”,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Vol. 26, 2010.
- Guenther, Patent Boxes: A Primer, 19.
- Karkinsky, T. and N. Riedel (2012), “Corporate Taxation and the Location of Patents within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8, No. 1, 2012.

Lisa Evers, Helen Miller, and Christoph Spengel, Intellectual Property Box Regimes : Effective Tax Rates and Tax Policy Considerations, ZEW Discussion Paper, No. 13-070

NARS 현안분석 vol.17, 2018.

OECD(2016), FDI flows(indicator)

PWC, 『Tax Notes』, 2012, p.1667.

[참고] 신성장산업의 주요 상세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별표7에서 12개 산업, 47개 분야, 223개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2021.2.17. 개정)

* '20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첨단장비 등이 추가, () 해당기술의 개수

구분	분야	
1. 미래형자동차(11)	가. 자율 주행차(5)	나. 전기 구동차(6)
2. 지능정보(23)	가. 인공지능(5) 다. 클라우드(3) 마. 착용형스마트기기(5) 사. 블록체인(1)	나. 사물인터넷(3) 라. 빅데이터(2) 바. IT 융합(3) 아. 양자컴퓨터(1)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가. 기반 SW(5)	나. 융합보안(4)
4. 콘텐츠(10)	가. 실감형 콘텐츠(6)	나. 문화콘텐츠(4)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3)	가. 지능형 반도체·센서(7) 다. OLED(6) 마. AR디바이스(1)	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8) 라. 3D프린팅(1)
6. 차세대 방송통신(8)	가.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5) 나. UHD(Ultra-High Definition)(3)	
7. 바이오·헬스(24)	가. 바이오·화학물약(9) 다. 바이오 농수산·식품(7)	나. 의료기기·헬스케어(6) 라. 바이오 화학(2)
8. 에너지산업·환경(42)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3) 다. 에너지효율향상(12) 마. 원자력(7)	나. 신재생에너지(9)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11)
9. 융복합소재(25)	가. 고기능섬유(9) 다. 하이퍼 플라스틱(1) 마. 구리합금(2) 사. 특수강(3)	나. 초경량 금속(3) 라. 타이타늄(1) 바. 몰리브덴(1) 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5)
10. 로봇(17)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6) 다. 의료 및 생활 로봇(6)	나. 안전로봇(2) 라. 로봇공통(3)
11. 항공·우주(11)	가. 무인이동체(8)	나. 우주(3)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가. 첨단소재(4) 다. 첨단장비(8)	나. 첨단부품(8)

[붙임] 정책지원 내용

1. 특허박스제도 관련 정책지원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 작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을 위해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세제혜택 담당자에게 전달
- 한국형 특허박스 모델 적용을 위해 중국 첨단기술제도 조사
- 해외 특허박스제도 적용 유럽 주요국가의 적용 사례 및 제도 조사
- SMART3 자료 분석
- 신성장동력산업 구성 분석
- 세무전문가 자문회의(장기락 세무사)
- 특허박스제도 관련 다수 정책지원

2. 조세지출건의서 지원

- 특허거래 과세특례 (참고 자료)

3. 조세제도 관련 정책지원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복지원 관련 자문
- 기술대여(로열티)에 대한 세제혜택 해외사례 조사

지식재산 조세지원 검토

IP와 BEPS Project AP5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EU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 (1997)	▶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제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세율
	▶ 실질적인 경제활동 부재에도 조세혜택부여
	▶ 국제기준과 다른 다국적기업의 이익결정기준
OECD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 (1998)	▶ 투명성 결여 - 예규를 통한 과세
	▶ 실효세율이 0이거나 아주 낮은 경우
	▶ RING-FENCING : 특허조세지원대상자를 비거주자로 한정하고 국내시장과 격리하여 국내경제보호
	▶ 투명성이 결여된 제도를 통한 거주지국의 과세방해
OECD BEPS AP 5 도입배경	▶ 행정관행 등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결여된 경우
	▶ 개별국가별로 유해조세환경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공통기준 마련하고 상호협력
	▶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세혜택규정 및 비 공개되는 예규를 이용한 조세혜택에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 google은미국에서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양도하고 이들 국가에서 운영중인 특허박스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탈세(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 유해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활동요건과 비 공개 예규에 대한 자동정보교환장치 권고

IP와 BEPS Project AP5 권고사항

실질적 활동기준	▶ IP에 대한 특혜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입장	
	▶ 실질적 활동요건이란 실질 활동이 확인된 납세자만이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및 연구 활동과 특혜제도를 상호 연계시키는 것(NEXUS APPROACH)	
	▶ IP특혜제도는 IP개발을 위한 지출액과 IP이익을 연계하여 조세혜택이익(=세액공제액)을 계산	
IP에서의 실질적 활동기준	(1) 연계비율을 실질적 활동의 대응치로 간주	
	(2) 조세혜택이익(세액공제액)= IP총이익×연계비율	
	(3) 연계비율 = IP개발을 위해 발생한 적격지출액 ÷ IP개발을 위해 발생한 총지출액	
	①IP총이익	로얄티나 지적재산권 양도이익 등 IP관련 세법상의 소득
	②IP적격지출액	납세자의 IP개발지출액 + 제3자에게 지급한 아웃소싱금액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이자비용, 임대료 등의 일반비용은 제외
	③IP총지출액	납세자IP개발지출액 + 제3자에게 지급한 아웃소싱금액+IP취득원가 +관계인에게 지급한 아웃소싱금액
	(4) 모든 지출과IP총이익은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가능 하여야 함(증빙의 문서화)	
(5) 각 국가는 연계접근법에 따르되 연계비율, 증빙의 문서화, 연계비율 이외의 특례 비용 사용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재량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자동정보교환	▶ IP관련 특혜제도에 대한 예규의 경우 조세혜택을 제공하면서 유효세율이 낮거나 0 이면 정보교환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

구분	구체적 내용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①의 비율 + ②의 비율)	
	① :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일반기업 20%	
	②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과세연도수입금액】× 3배수, 다만,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한도	
연구개발비범위	자체 연구개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원천 R/D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인건비
		R/D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신성장·원천 R/D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산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용 한정)·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주주인 임원, 신성장·원천 R/D 와 일반 R/D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의 인건비는 제외	
위탁및공동연구개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의 기관에 신성장·원천 R/D 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비용 (재위탁을 포함)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의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비용	
	ERP설비, POS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제외	
연구소 전담부서	신성장·원천 R/D 업무 만 수행 기업	국내 소재 신성장·원천 R/D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일반 + 신성장·원천 R/D 동시 수행 기업	① 신성장·원천 R/D 업무에 관한 별도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신성장·원천 R/D + 일반 R/D 업무 모두 수행하는 조직 → 신성장·원천 R/D 전담부서 등으로 간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구분	구체적 내용		
세액공제액	다음 ①,②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①초과 발생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0 초과하는 금액 × 25% 중견기업 : 40%, 중소기업 : 50%	
	②해당 연도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공제율	
		공제율	①중소기업 25%
			②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기간에 따라 15% 또는 10%
③중견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④ ①내지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의 비율, 다만 2%를 한도			
해당 연도분 적용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2020.1.1. 이후 개정사항(3+4+5)

구분경리 : 신성장원천R/D 와 일반 R/D 비용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안분계산 : 신성장원천R/D 와 일반 R/D 비용이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법 소정의 방식(기획재정부령)으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

증명서류의 제출

2019.12.31. 이전	제출서류	2020.1.1.이후
세무서 제출	세액공제신청서	세무서 제출
세무서 제출	연구인력개발명세서	세무서 제출
세무서제출	연구개발계획서	5년간 회사보관
N/A	연구개발보고서	5년간 회사보관
N/A	연구노트	5년간 회사보관(일반R/D 작성의무 없음)

2019.12.31. 이전 연구개발계획서는 법정서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사전심사제도 : 2020.1.1. 이후 지출 분부터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2020.1.1. 이후 지출 분부터 연구개발비용에서 삭제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2020.1.1. 이후 연구개발비의 범위(별표6관련)

가. 자체연구개발

연구개발비용항목	구분	구체적 내용
①인건비	원칙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전담부서 등)에 근무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
	제외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퇴직연금계좌납부금
	전담부서	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산디진흥법)
	전담요원 제외	주주임원 +①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 주주임원 +②법인세법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주주임원 +③위②의자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견본품 구입비 등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용 외주가격비를 포함)	
	소프트웨어(문산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용 한정)·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③임차료	전담부서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④시설이용료	대학, 전문대학,국공립연구기관 등(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비용항목	구분	구체적 내용
연구개발용역위탁비	원칙	연구기관에 대한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위탁비용(재위탁 포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비용비용
	제외	ERP, POS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연구개발용역위탁비	개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위탁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게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출한 기술자문료,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 소화개량비

구분	구체적 내용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연구원
교수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포함)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
외국인기술자 ①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 ②학사이상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영 별표 4의 산업,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광업, 건설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
	①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②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③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④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⑤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 ⑥비금융 지주회사, ⑦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⑧측량업, ⑨제도업, ⑩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 ⑪지도제작업, ⑫전문디자인업, ⑬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 ⑭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 ⑮도양 및 지하수 정화업(도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 (16)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도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으로 한정)

마.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20.1.1. 이후 인력개발비의 범위(별표6관련)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구분	구체적 내용
위탁훈련비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나.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구분	구체적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실습재료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습재료비(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구체적 내용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내일채움공제)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의 비용.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구분	구체적 내용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비 중 일정한 비용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 훈련비 한정)·한국표준협회·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능률협회·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에 대한 위탁훈련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마.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1.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구분	구체적 내용
대학운영비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비례형 특허박스 제도 자문회의

□ 회의 개요

- (일정) 2021.6.17.(목) 15:00 ~ 17: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목적) 비례형 특허박스 추진 시 필요한 실무적 사항 논의

□ 비례형 특허박스 개요

- (방식) 전체 소득 중 특허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산출하여 해당 소득(특허박스 적용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50%

[예시] 비례형 특허박스 적용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① IP 매출액 7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IP 제품 관련 비용 일체 400만원 (R&D) 기업 직접 투자 200만원, 계열사 발주 100만원 (기타 제품 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등 1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IP 적격 소득 3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특허박스 적용 소득 = 200만원 * 넥서스 비율(0.67) × 300만원 ≈ 200만원</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특허박스 비적용 소득 = 1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 × 0.5 × 법인세율</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 × 법인세율</p>	<p style="text-align: center;">② 非 IP 매출액 3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非 IP 비용 일체 1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소득 2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 × 법인세율</p>
---	--

⇒ IP적격소득 중 넥서스 비율을 곱한 부분 (특허박스 적용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특허박스 적용 소득 계산 방법>

$$= \frac{\text{기업이 직접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text{연구개발 및 IP 획득 비용 등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된 모든 비용}} \times \text{기업의 전체 IP 적격 소득}$$

$$= \frac{D+O}{D+O+A+R} \times \text{기업의 전체 IP 적격 소득}$$

*** 붉은 점선 부분이 넥서스 비율을 의미**
 D: 기업이 직접 지출한 R&D 비용, O: 계열사를 제외한 제3자(대학 공공연 등)에게 발주한 R&D 비용
 A: IP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 R: 기업의 계열사에게 발주한 R&D 비용

- (특징) ① 특허소득과 세액감면액이 비례하여 제도의 합리성 高 ,
- ② IP-非IP 소득 구분·관리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및 행정부담 가중

[참고] 특허박스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한 의무 증명사항 예시

- ① IP자산 기준이 아닌 제품이나 제품군 기준으로 소득-지출을 증명·제출한 경우 해당 방식을 사용해야할 필요성 증명
- ② 적격 IP자산의 보유 증명
- ③ 동일한 IP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세액감면 등의 세제 혜택 존재 시 관련 서류 제출
- ④ 범용적 성격 등의 R&D 지출 발생 시 IP자산과의 연계성 또는 해당 지출의 IP자산별 배분방식 증명
- ⑤ 적격지출 및 전반적 지출을 소득과 동일한 IP자산에 추적했음을 증명
- ⑥ 관련자로부터 IP취득 시 공정가격을 입증하는 전반적 지출 내역 증빙

□ 주요 논의사항

①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구분경리 방식)와 비례형 특허박스 제도의 병행 가능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특허박스를 병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
- 중소·중견기업의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구분경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여부

② 조세 회피 방지 가능성

- 일반적으로 특정 종류의 자산(IP 자산) 보유를 증명하는 방식
- 의무 증명사항들의 실무적인 적용 방식과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
- 특허박스 적용 소득 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문제(인건비, 임차료 등의 구분 문제)와 그 해결 방법 및 해외사례

③ 행정 및 기업 부담

- 비례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시 중소·중견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증가 가능성 및 행정 처리 비용 증가 가능성

[참고] 조세지출건의서 지원 내용

기술거래과세 특례 확대

1. 제도개요

○ 조세지출 내용

- 목적: 기술이전·취득·대여에 따른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 제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10% 세액공제를 인정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25% 세액공제제도를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중견기업의 기술대여 활성화 필요. 또한, 2018.12.31.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 인정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에 대한 조세지원 변경(안)

	현행		변경(안)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술이전	중소·중견 기업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 기업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50% 대기업: 10%
기술취득	중소·중견·대 기업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5% (2018.12.31.자로 일몰)	중소·중견·대 기업	(개정)일몰기한 연장(2022.12.31.)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기술대여	중소 기업	중소기업 25%	중소·중견·대 기업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5% 대기업: 5%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전·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 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신기술이 출현하고 다양한 이종분야 간 결합이 중요해지면서 ‘개방형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란 연구,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전단계 에서 외부의 R&D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 ** 2003년 체스브로 교수가 개념 정립, 외부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입하는 개방(외부→내부)과 내부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외부로 내보내는 개방(내부→외부)을 포괄
- 그러나, 여전히 기업 간 기술거래 문화는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
 - ※ ’16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인프라”순위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체간 협력정도”는 42위에 머물

- 기술이전·취득·대여의 기술거래는 기술사업화 시간단축 및 리스크 제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나, 현행 기술취득·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정당한 기술거래를 장려하는 효과가 제한적
-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는 휴면특허 등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바 과세특례 범위를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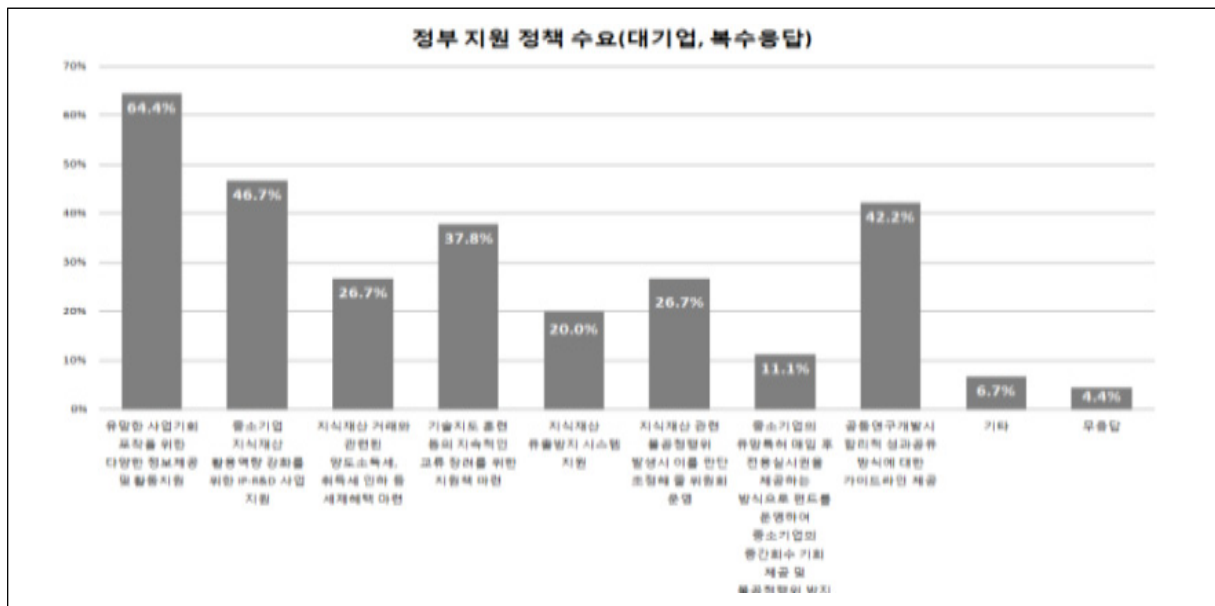
-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기술거래 세제혜택 범위확대)

- 대기업 기술이전, 대·중견기업 기술대여소득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혜택 기한 연장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액 상향조정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중 기업 보유특허 중 제품·서비스의 생산에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 이전한 특허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업화율은 대기업 82.2%, 중견기업 67.9%, 중소기업 74.8%로 대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출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이 높다는 것은 중소·중견기업 비해 대기업이 가진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식재산 매각·이전한 기업의 비율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3.3%, 중소기업 5.3%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우수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의 매각·이전비율이 더 낮게 나타남(출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조특법 제 12조 관련 조세 지출: ('05) 1920억(대기업 포함) →('18) 4억
(기술이전·대여 세액감면 제도는 '05년 폐지되었다 14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재도입)

- 기술이 복잡해지고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상당한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체 R&D 보다 기술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가 R&D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최근 기술간 융합이 보편화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필요한 기술의 78%를 외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R&D 또는 특허의 중요도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일수록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 비중이 높음**
- * 2012년 미국 버클리대학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 ** 제조업의 외부기술도입 비중 : 하이테크 91%, 미디엄테크 83%, 로우테크 40% 순
- 반면, 국내기업은 외부기술 도입보다는 자체 기술개발 비중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 자체개발 84.5%, 공동개발 11.7%, 외부도입 1.8% (출처: KIAT 국내기업 기술사업화 실태조사 주요결과, '15.12.)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기술취득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없음
- 또한 과세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기술대여 및 취득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술대여 및 취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기업의 정부지원 정책 수요



자료: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따라서 조특법 제12조제2항 기술취득에 대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대기업 기술거래도 일부 과세혜택을 부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혜택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제고해야함.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정부의 지원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기업의 26.7%가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법률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40조

발명진흥법-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감면방법: 세액공제
- 대상자:
 - (기술이전)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기술대여) 기술을 대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기술취득) 기술을 취득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전·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 운영기간: (기술이전 및 대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 (기술취득) 2022년 12월 31일까지

○ 예상 감면액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 5년간 전망치	35.3	35.7	36.1	36.5	36.8

* 상기 추정치는 대기업 기술이전 중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에 대한 자료, 대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대기업의 기술이전 건수 비중을 기준으로 예상감면액을 분석하였음

** '19년 예상감면액 도출(35억) 후 '20년부터 1%의 기술이전율 증가를 가정(최근 3년간의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평균 기술이전 증가율)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자를 대기업으로 확대할 경우(10%의 세액감면)

- 특허권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건수가 3,456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건수는 194건(중견기업은 6건), 대기업에서 개인 및 기타(공공기관 등)로 이전한 건수는 140건으로 대기업의 기술이전 전체 건수는 3796건으로 나타남.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 전(2006년) 감면규모는 1,513억원(기재부, '07)이므로, 기술무역 규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세액 감면 규모를 추정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은 각각 85%, 15%로(기술무역통계, KOSIS) '06년 대기업의 세액감면 규모는 1,286억원으로 추정
- 대기업의 기술이전 상대기업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5.1%와 0.2%이므로,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를 추정하면 68억원 수준(1,286억원×(5.1%+0.2%)=68억원).
- '06년과 '16년 대기업 연구개발비 규모의 변화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16년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규모는 173억원으로 추정됨 ((68억원('06년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규모)×407,787억원('16년 연구개발비)/160,217억원('06년 연구개발비)=173억원)
- 2006년 제도는 50% 감면제도이므로 이를 개정안인 10%세액공제로 환산하면, 173억원/5이므로 35억원이 됨.
- 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외에도 기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중견기업 대여 소득 세액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기술이전 세액공제 도입 이후 기술거래관련 조세지출 실적이 2~14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조세지출예산서), 기술대여·취득에 대한 예상 감면세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2016~2018 특허취득 건수

To \ From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대기업	2016	3,964	484	907	52	118	5,525
	2017	1,233	121	254	31	80	1,719
	2018	3,456	19	1,330	35	112	4,952
중견기업	2016	10	1,552	2,332	8	33	3,935
	2017	33	992	449	7	28	1,509
	2018	6	842	377	4	31	1,260
중소기업	2016	87	238	3,624	1,158	195	5,302
	2017	117	238	4,093	1,150	323	5,921
	2018	194	176	3,790	1,182	282	5,624
개인	2016	11	38	3,842	1,129	271	5,291
	2017	11	12	4,113	1,175	166	5,477
	2018	7	84	5,332	1,284	157	6,864
기타	2016	92	44	1,613	461	8,152	10,362
	2017	40	65	1,388	527	5,747	7,767
	2018	133	106	1,380	427	5,354	7,400
합계	2016	4,164	2,356	12,318	2,808	8,769	30,415
	2017	1,434	1,428	10,297	2,890	6,344	22,393
	2018	3,796	1,227	12,209	2,932	5,936	26,100

출처: 특허청 내부자료

○ 주요 세법 변경사항

구분	연도	주요 변경사항
기술취득	20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신설 - 공제비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2002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공제비율은 7%로 축소
	2005	• 특수관계자 간 기술취득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0	•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6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으로 한정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확대 •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 시 5% 세액공제
	2018	• 일몰기간 도래도 폐지
기술양도·대여	1982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 내국인 대상 양도·대여소득 100% 세액감면
	1989	• 소득공제 대상을 내국인 대상 기술비법의 양도·대여까지 확대
	199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소득공제 축소 및 일몰제도 도입 - 양도·대여소득의 50% 세액감면
	2004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비법 제공 관련 조세지원 배제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2년)
	2005	•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제도 폐지
	2014	•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재도입 - 50% 세액감면 •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확대 및 기술대여 세액감면 허용 - 중견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25% 세액감면
	2016	• 기술대여뿐 아니라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으로 한정
	2017	•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특허권 관련 손실 금액 차감

※ 2005년 과세특례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014년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제도 재도입

2. 작성 항목

① 목적

○ (1-1) 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구분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기술이전·취득·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술거래의 실질적 활성화 기대
특정 상황/문제	우리나라의 전체 특허이전건수는 26,100건이며, 기업간 특허이전 건수는 10,190건(전체의 39%)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많은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자체 R&D 보다는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혁신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 산업현장에서 기술거래는 아직 저조 * 최근 3개년 연간평균 특허거래 건수 : 26,302건 ** '16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인프라" 순위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체간 협력정도"는 42위에 머물고 있음
정책 대상자	기술취득·이전·대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2) 조세지출과 특정 상황과의 연계성

-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술이전의 활성화 효과 기대
- 기술이전·대여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기술취득에 대한 조특법 제12조제2항의 개정
→기술취득 순투자금액 인하→기술취득거래 증가→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대기업 보유특허·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
※기술이전 및 취득에 따른 세제혜택 건의
(*18.3,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를 통해 제안)

○ (1-3) 조세지출과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와의 연계성

구분	주요 내용
부처의 정책방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추진 - 기술거래 활성화
조세지출과의 연계성	지식재산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② 성과지표

○ (2-1) 성과지표의 설정

- 지표명 및 개념: 기업 기술 이전비율
- 지표산출방식: 기업 기술이전비율(=기술이전 기업수/전체 기업수)
- 목적과의 연계성: 기술이전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취득 과세특례의 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 기술의 중소·중견기업 이전과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기술 취득을 촉진하여 기술거래 활성화

○ (2-2)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7
- 목표치 설정 근거: 2018년 기술이전 비율 5.0%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씩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

구분	향후 목표치				
	'19	'20	'21	'22	'23
기술이전 비율	6.0%	7.0%	8.0%	9.0%	10.0%

③ 대상자

○ 정책대상자 파악

- 정책대상자 선정:

(기술이전)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기술대여) 기술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기술취득) 기술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 대상범위 : 특히 실질적으로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보유한 대기업 920개사가 주요 정책 대상(17. 기준, 특허청)

④ 기대효과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중 선택하여 작성)

(4-1) 효율성 측면의 효과

○ 대기업의 기술이전·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의 실효성 제고

○ 지식정보의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4-2) 형평성 측면의 효과

○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25% 세액공제제도(중소기업:25%, 중견기업:없음)와 기술 취득에 대한 10%의 세액공제제도(중소기업:10%, 중견기업: 5%)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기술대여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

⑤ 세출예산

○ 목적이 유사한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 세출예산 사업명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지원 내용: 기술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거래전문관 육성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지원 규모: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거래지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규모(단위:억원)		
코드	코드	코드	명	코드	명	2016 결산	2017 예산	2018 예산
110	114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보호및활용 촉진	1332 -303	특허기술 활용촉진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거래 지원")	20.9	20.9	20.9

- 상호보완효과: '지식재산거래 지원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므로, 중견·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법인세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감면제도와는 상호 보완 관계
- 중복 조정여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달라 중복조정 불필요

⑥ 선행연구

○ 노민선(2012),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7(4)

-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주요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경근(2015), 연구개발(R&D)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계산세무사, 2015년 가을호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EU집행위원회와 국제조세협회에서 제시한 R&D 정책 수입의 원칙 및 모범기준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
-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감면을 축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 기술이전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김종갑, 2006)

-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연구한 결과, 해당 기술이전을 통해서 평균 20.1%의 매출 향상, 13.86%의 수익향상, 17.66%의 생산성 향상 및 16.15%의 비용절감 효과를 제시

○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 방안 연구(손원익·홍승현, 2011)

- 외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무형자산(지식,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Patent Box*'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에 대해 소득공제 실시
- 네덜란드: 특허 또는 적격이고 승인받은 연구개발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중국: 등록된 특허와 노하우의 이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스위스: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의 이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IP)의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중국, 영국 등에서 실시중

○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지식재산연구원, 2013)

- 대기업을 지식재산 관련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고 있음.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노민선·이삼열, 2014)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조세지원 활용도가 저조
-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자산인 기술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7%)이 유형자산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10%)보다 낮으므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안)

현행	개정(안)
<p>▶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100분의 10(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등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등을 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기초연구과제 미래전략 - 국가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발 행 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전 화 (02) 2189-2600
팩 스 (02) 2189-2694
인 쇄 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미래전략

**조세분야 지식재산 정책 수립 지원 :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 분석**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1544-8080 Fax.042)489-0194 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02)2189-2600 Fax.02)2189-2694 www.kiip.re.kr

ISBN : 979-11-6884-003-4 13500
DOI : 10.8080/P9791168840034